선운에 눈부신 삶이 완성됩니다!

약속된 프리미엄–

광주선운 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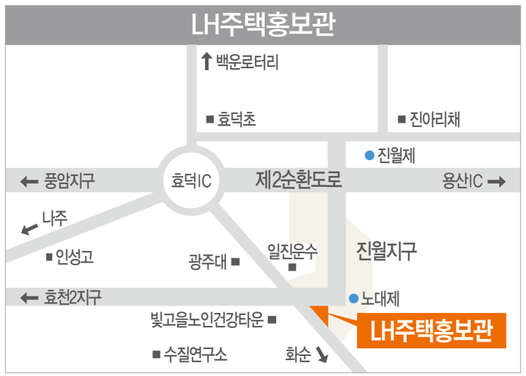

LH 콜센터 | 1600-1004
주택홍보관 | 062-653-8200, 8199
홈 페 이 지 | www.LH.or.kr

시 행 사 : (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 사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 CG 등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투시도,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인 · 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건물 외관 디자인, 색채,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및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사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 등은 동별 · 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도로 인접으로 도로 소음 발생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공부분 시설물 등) 및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전 홍보물 전단지 및 카탈로그에 명시한 내용이 공사 전후에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관 및 세대 측벽에 당사 홍보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컷으로 측벽 그래픽 및 문양, 색채, 조경 등 디테일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향, 층 또는 대지인접 도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으니 필히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가치를 약속합니다

완벽한 입지가 주는 미래가치–
특급 생활프리미엄을 품고 쾌속질주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과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선운지구, 초등학교도 어린이공원도 한발 가깝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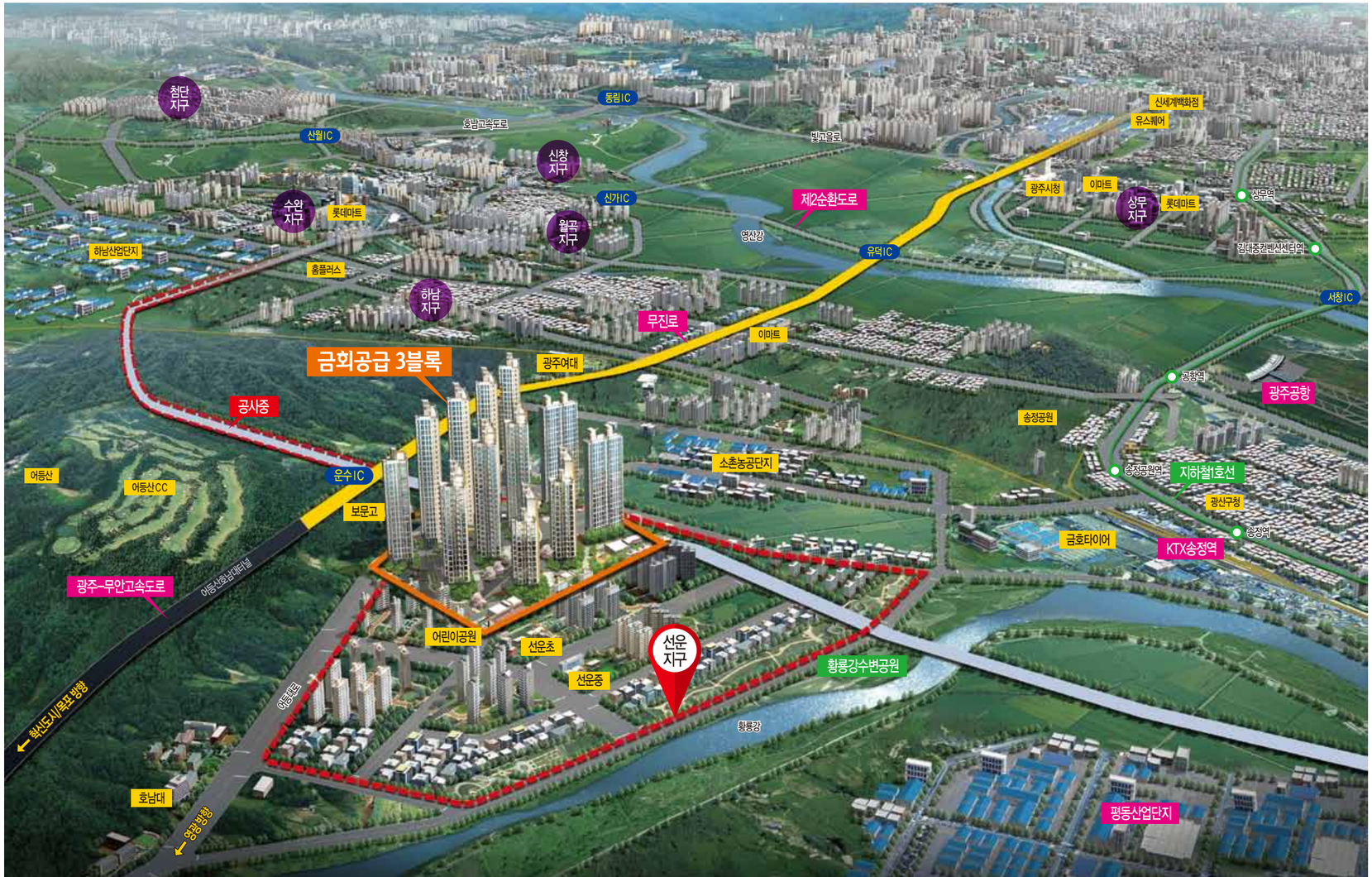

시내·외 어디든 좋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완벽한 생활인프라

- **탁월한 교통환경** | 무진로, 제2순환도로, 광주–무안고속도로, KTX송정역, 광주공항 등 멀티교통망
- **우수한 교육환경** | 지구내 유치원, 선운초, 선운중, 인근에 호남대, 보문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
- **편리한 생활환경** | 송정–하남–수완의 명품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눈부신 생활환경
- **천혜의 주거환경** | 어등산과 황룡강의 배산임수형 명당, 단지옆 어린이공원, 황룡강수변공원 등 에코라이프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입니다.

황룡강이 삶의 활기를, 어등산이 인생의 정기를 드립니다
광주선운의 쾌적한 삶과 녹색 프리미엄!

황룡강수변공원

단지 인근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갖춘 황룡강수변공원이 위치하여 건강한 활력과 또 다른 휴식의 즐거움이 제공됩니다

어등산 등산로

고도 293m에 각양각색의 등산코스를 갖춘 어등산은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프리미엄이 됩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광역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지형물,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지역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의 일러스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라이프을 약속합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행복쉼터–
365일 **늘 푸른 내추럴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생활, 단지 안에서 다양한 문화생활과 자연의 푸른 혜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 시설물 등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난간, 생울타리담장 그리고 방음벽(북측, 동측)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테마파크는 자녀들이 자연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테마정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 Theme Park |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당신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테마파크...
물과 길과 꽃이 하나된 클래식 정원을 거닐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싱그러운 자연이 함께합니다 지나는 길목마다 생기 넘치는 테마파크

- **어린이놀이터** |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초록빛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입주민의 건강지수를 높여주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쾌적한 운동공간 조성
- **주출입구** | 아파트의 품격과 함께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단지 주출입구에 고급문주 설치

※본 홍보물에 사용된 테마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 시설물 등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난간, 생울타리담장 그리고 방음벽(북측, 동측)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Site Plan

녹색 주거공간을 약속합니다

자연으로 설계한 친환경 단지–
가슴 설레는 에코단지로 자부심을 드립니다

보이는 곳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곳은 견고하게, 앞선 기술력과 첨단 건축미학으로 완성됩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 시설물 등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난간, 생울타리담장 그리고 방음벽(북측, 동측)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출입구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차량 진 · 출입이 불가합니다.

광주선운 **동 · 호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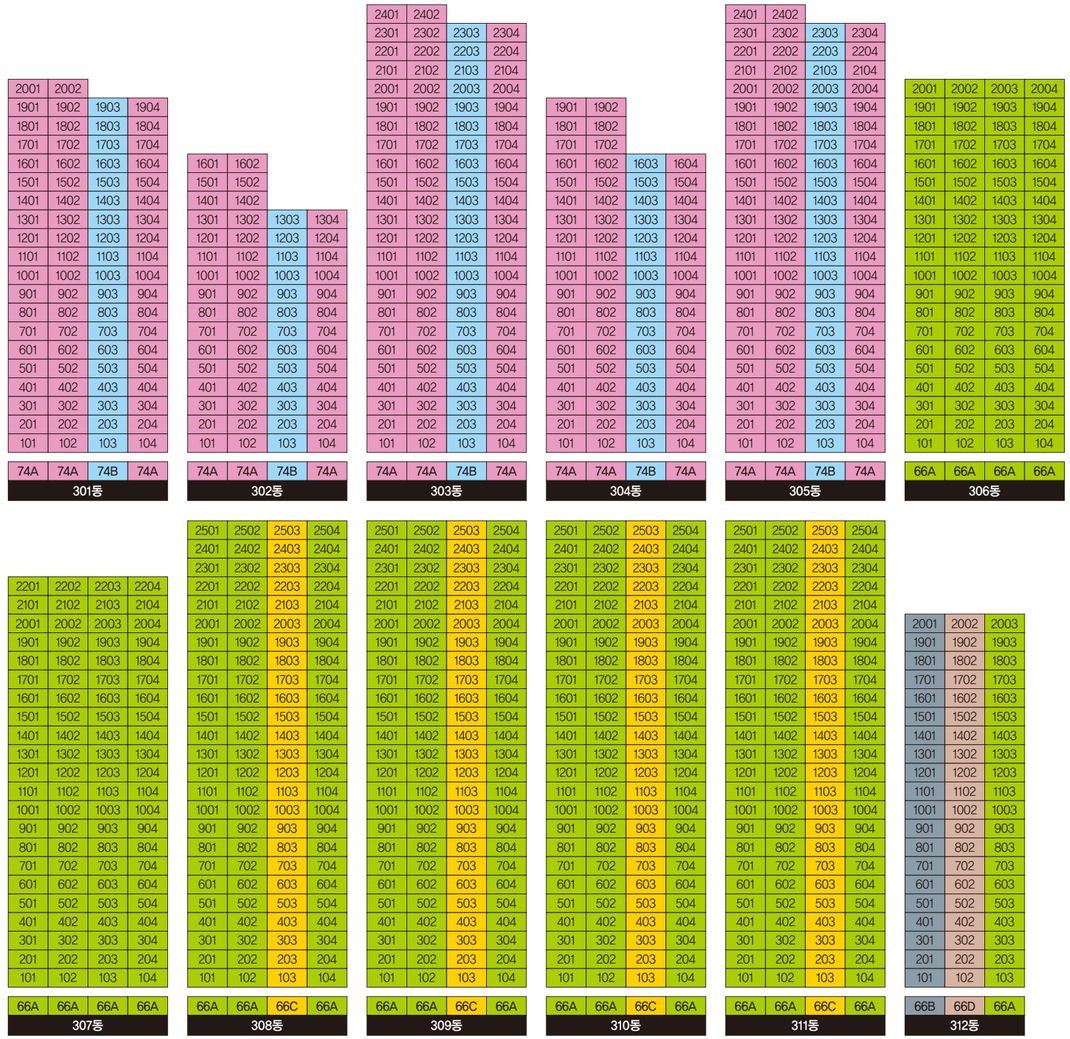

광주선운 **단지 PLAN**

주택형(㎡)	66A	66B	66C	66D	74A	74B	계
세대수	488	20	100	20	300	94	1,022

첨단생활을 약속합니다

똑똑한 첨단지능형시스템–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앞선 첨단생활과학으로 스마트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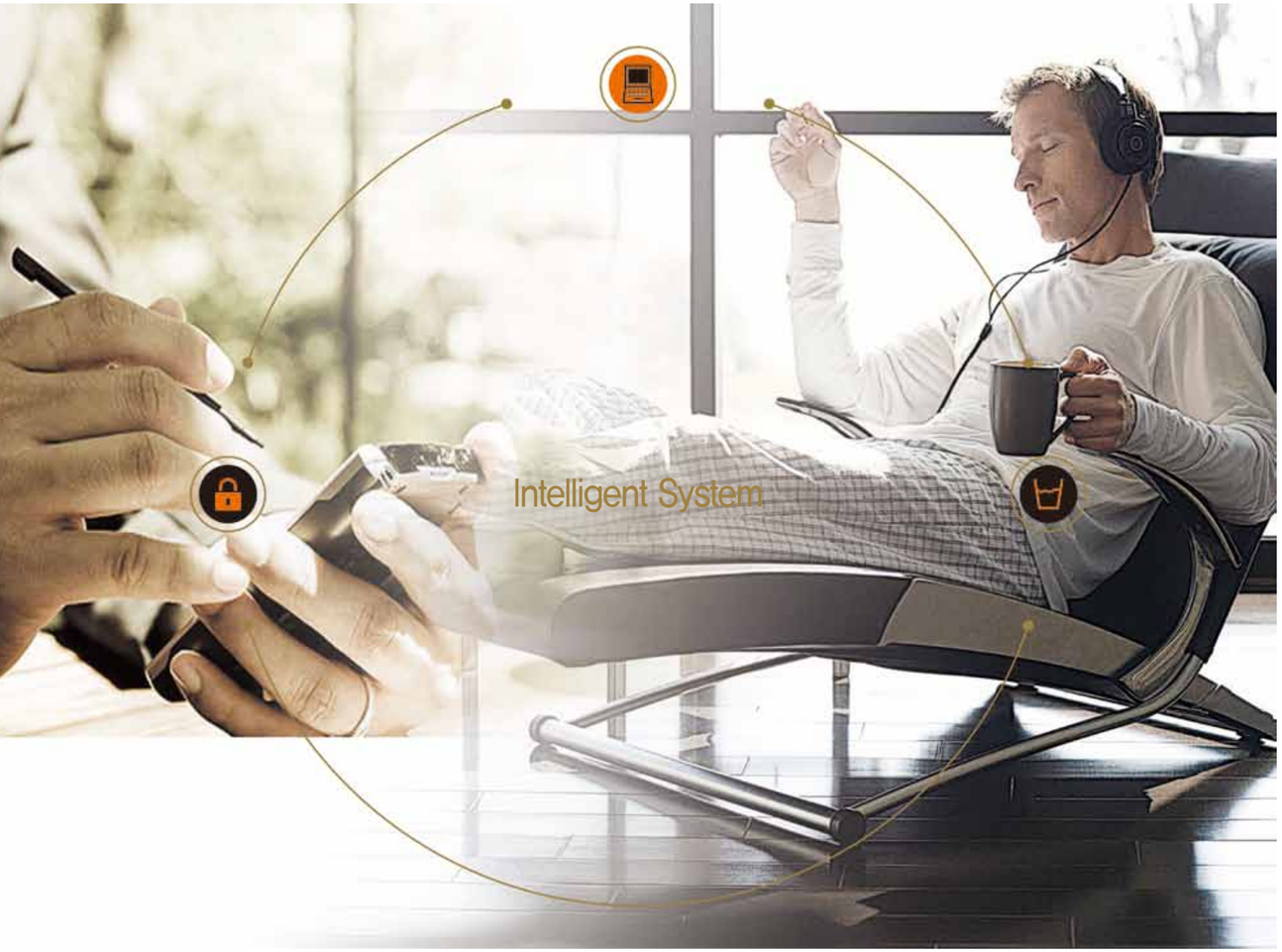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Home Network |

손 끝으로 안전까지 컨트롤하는 편리한 첨단생활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첨단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안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월패드로 방문자 확인, 현관개폐, 공지 사항 및 원격검침 조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스밸브 차단, 거실조명 및 난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Digital System |

편리함이 가득한 디지털시스템으로 삶의 가치를 높입니다

- **디지털 위성방송 시스템**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등 다양한 정보와 방송을 제공
- **초고속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AA등급의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 **원격검침 시스템** 전기, 수도, 가스를 방문없이 원격검침 및 사용량 조회가능
-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입주자 차량은 자동 통과하고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
- **방범 · 방재 시스템** 가스누출, 화재, 세대 외부침입 발생 시 자동으로 관리사무소에 통보(일부 기능은 설정시 가능)
- **무인경비 시스템** 세대 월패드와 공동현관 로비폰을 통해 방문자 확인 및 개폐, 외부인 사전통제
- **CCTV 시스템** 승강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 주 · 부출입구에 CCTV설치
- **대기전력 차단장치**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감

| Clean System |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클린시스템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음식물 탈수기** 싱크대하부에 음식물탈수기를 설치하여 위생을 높이고 쓰레기를 절감
- **바닥열 이용 급기시스템** 바닥열을 이용한 강제급기, 자연배기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비데(공용욕실)** 가족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고급 비데를 설치해 품격높은 욕실문화 연출
-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각 방의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난방비 절감
- **싱크용 절수기**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발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절수기 설치

※본 홍보물에 사용된 시스템 관련 이미지 및 일러스트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66㎡A

총 488세대

체감공간이 훨씬 넓어진 평면–
실용적인 공간이 삶에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확장형

유사시 옆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량벽체 구조임
(공급공고 유의사항 참조)

발코니확장부분

66㎡A | 총 488세대							
■ 전 용 면 적	66.9600㎡	• 거 실	21.58㎡	• 욕 실1	3.49㎡
■ 주거공용면적	23.8108㎡	• 주 방 / 식 당	9.96㎡	• 욕 실2	2.23㎡
■ 공 급 면 적	90.7708㎡	• 침 실1	7.06㎡	• 현 관	2.62㎡
■ 기타공용면적	2.6405㎡	• 침 실2	9.67㎡	• 발 코 니1	16.47㎡
■ 지하주차장	28.3988㎡	• 침 실3	5.03㎡	• 발 코 니2	4.77㎡
■ 계 약 면 적	121.8101㎡	• 드 레 스 룸	4.14㎡	• 발 코 니3	5.64㎡
		• 팬 트 리	1.18㎡	• 덕트면적1	0.80㎡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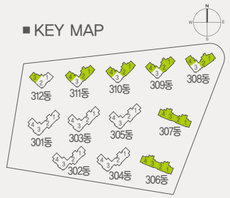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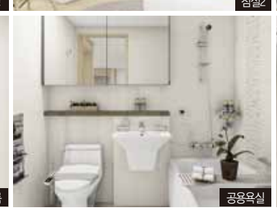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66㎡B

총 20세대

남다른 감각이 돋보이는 평면–
세련된 공간디자인으로 생활의 멋이 느껴집니다

확장형

66㎡B | 총 20세대	
■ 전 용 면 적	66.9400㎡
■ 주거공용면적	23.8037㎡
■ 공 급 면 적	90.7437㎡
■ 기타공용면적	2.6397㎡
■ 지하주차장	28.3903㎡
■ 계 약 면 적	121.7737㎡

• 거 실	21.35㎡
• 주 방 / 식 당	9.97㎡
• 침 실 1	10.47㎡
• 침 실 2	6.56㎡
• 침 실 3	5.03㎡
• 드 레 스 룸	4.07㎡
• 팬 트 리	1.15㎡

• 욕 실 1	3.49㎡
• 욕 실 2	2.23㎡
• 현 관	2.62㎡
• 발 코 니 1	16.65㎡
• 발 코 니 2	4.77㎡
• 발 코 니 3	5.64㎡
• 덕트면적1	0.80㎡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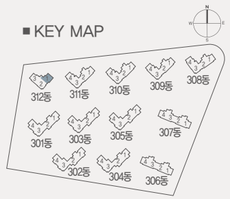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66㎡C

총 100세대

수납을 대폭 강화한 평면–
넉넉한 공간연출로 생활이 더 여유롭습니다

확장형

66㎡C | 총 100세대					
■ 전 용 면 적	66.8500㎡	• 거 실	21.45㎡	• 욕 실1	3.60㎡
■ 주거공용면적	23.7717㎡	• 주 방 / 식 당	8.36㎡	• 욕 실2	3.28㎡
■ 공 급 면 적	90.6217㎡	• 침 실1	9.78㎡	• 현 관	2.88㎡
■ 기타공용면적	2.6362㎡	• 침 실2	4.50㎡	• 발 코 니1	8.23㎡
■ 지하주차장	28.3521㎡	• 침 실3	9.00㎡	• 발 코 니2	5.43㎡
■ 계 약 면 적	121.6100㎡	• 드 레 스 룸	3.04㎡	• 발 코 니3	15.64㎡
		• 팬 트 리	0.96㎡	• 덕트면적1	2.35㎡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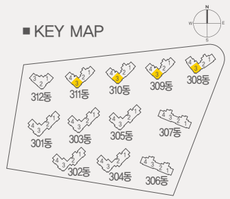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인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66㎡D

총 20세대

거실과 주방이 넉넉해진 평면–
공간의 가치를 특별하게 높였습니다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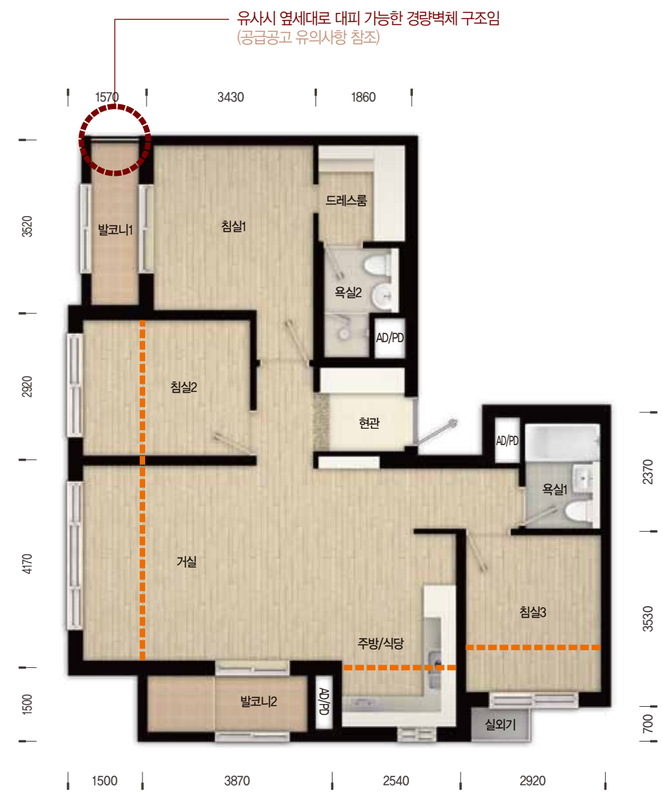

발코니확장부분

66㎡D | 총 20세대			
■ 전 용 면 적	66.9400㎡	• 거 실	20.18㎡
■ 주거공용면적	23.8037㎡	• 주 방 / 식 당	8.64㎡
■ 공 급 면 적	90.7437㎡	• 침 실 1	12.48㎡
■ 기타공용면적	2.6397㎡	• 침 실 2	6.04㎡
■ 지하주차장	28.3903㎡	• 침 실 3	6.10㎡
■ 계 약 면 적	121.7737㎡	• 드 레 스 룸	3.50㎡
		• 욕 실 1	3.34㎡

• 욕 실 2	3.26㎡
• 현 관	3.40㎡
• 발 코 니 1	15.21㎡
• 발 코 니 2	5.07㎡
• 발 코 니 3	8.18㎡
• 덕 트 면 적 1	2.13㎡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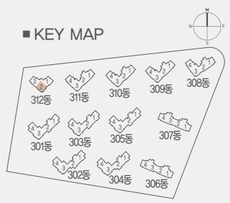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74㎡A

총 300세대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한 4Bay 평면–
효율적인 공간설계로 공간의 활용을 높입니다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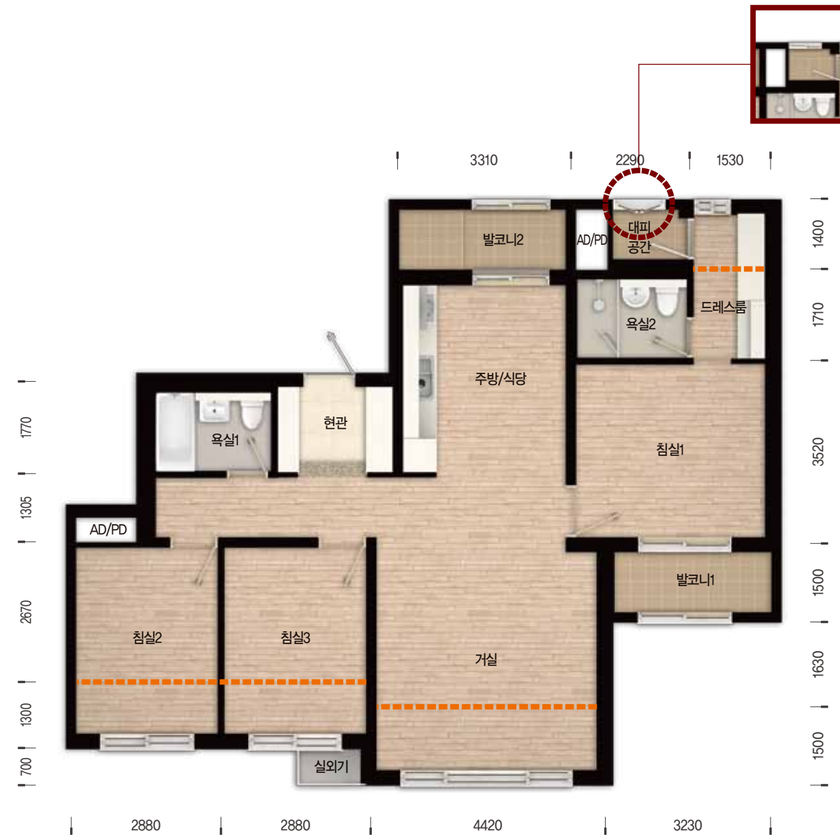

74㎡A | 총 300세대	
■ 전 용 면 적	74.9800㎡
■ 주거공용면적	26.6627㎡
■ 공 급 면 적	101.6427㎡
■ 기타공용면적	2.9568㎡
■ 지하주차장	31.8002㎡
■ 계 약 면 적	136.3997㎡

• 거 실	23.36㎡
• 주 방 / 식 당	11.80㎡
• 침 실 1	12.50㎡
• 침 실 2	6.79㎡
• 침 실 3	7.23㎡
• 드 레 스 룸	2.20㎡
• 욕 실 1	3.56㎡

• 욕 실 2	3.58㎡
• 현 관	3.96㎡
• 발 코 니 1	4.84㎡
• 발 코 니 2	4.97㎡
• 발 코 니 3	4.15㎡
• 발 코 니 4	14.98㎡
• 덕 트 면 적 1	0.97㎡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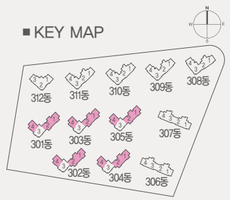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CG컷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는 스위치 ·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인쇄 과정상 시공 색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74㎡B

총 94세대

여유와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평면–
탁 트인 개방감과 공간마다 품격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확장형

74㎡B | 총 94세대	
■ 전 용 면 적	74.7300㎡
■ 주거공용면적	26.5738㎡
■ 공 급 면 적	101.3038㎡
■ 기타공용면적	2.9470㎡
■ 지하주차장	31.6942㎡
■ 계 약 면 적	135.9450㎡

• 거 실	21.88㎡
• 주 방 / 식 당	10.14㎡
• 침 실 1	12.41㎡
• 침 실 2	7.18㎡
• 침 실 3	7.40㎡
• 드 레 스 룸	4.62㎡
• 욕 실 1	3.56㎡

• 욕 실 2	3.41㎡
• 현 관	4.13㎡
• 발 코 니 1	11.79㎡
• 발 코 니 2	17.41㎡
• 덕 트 면 적 1	2.81㎡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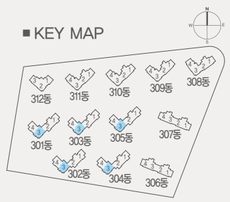

※상기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실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등), 세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품 목			시설내역 광주선운 66A	66B	66C	66D	74A	74B	비 고
현 관	현관디지털도어록		○	○	○	○	○	○	
	신발장		○	○	○	○	○	○	문짝 : 고광택(하이그로시) 도장마감
	현관바닥재		○	○	○	○	○	○	폴리싱타일
거 실	세대단말기(WALL PAD)		○	○	○	○	○	○	
	거실바닥재		○	○	○	○	○	○	강화마루
	서라운드스피커잭		○	○	○	○	○	○	
	거실아트월		○	○	○	○	○	○	MDF위 실크도배지
	거실 통로조명		○	○	○	○	○	○	
	거실 조명제어 스위치		○	○	○	○	○	○	
	거실반침장(팬트리)		○	○	○	X	X	X	
주 방	싱크대(상부장+하부장)		○	○	○	○	○	○	문짝 : 고광택(하이그로시) 도장마감, 상판 : 인조대리석급
	음식물탈수기		○	○	○	○	○	○	
	싱크용 절수기		○	○	○	○	○	○	
	침니형렌지후드		○	○	○	○	○	○	
	4구 가스레인지		○	○	○	○	○	○	그릴 미포함
	주방바닥재		○	○	○	○	○	○	강화마루
침 실	침실바닥재		○	○	○	○	○	○	강화마루
	침실1 드레스룸(화장대)		○	○	○	○	○	○	
	침실1 드레스룸(반침장)		○	○	○	○	○	○	
욕 실	욕조수전(공용)		○	○	○	○	○	○	안마헤드, 온도조절형
	샤워수전(부부)		○	○	○	○	○	○	안마 + Rain 형헤드, 온도조절형
	양변기(공용, 부부)		○	○	○	○	○	○	원피스(High 탱크형)
	비데(공용)		○	○	○	○	○	○	
	잡지꽂이겸휴지걸이(공용, 부부)		○	○	○	○	○	○	
	슬라이딩형 수납장(공용, 부부)		○	○	○	○	○	○	2-DOOR형, 슬라이딩형
기 타	발코니 수도꼭지	66A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2구형 : 일반형+카프링)						
		66B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2구형 : 일반형+카프링)						
		66C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1구형 : 일반형) (냉 · 온수1구형 : 카프링)						
		66D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2구형 : 일반형+카프링)						
		74A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2구형 : 일반형+카프링)						
		74B	발코니1(냉수2구형 : 일반형+물뿌리기), 발코니2(냉 · 온수1구형 : 일반형) (냉 · 온수1구형 : 카프링)						
	에어컨냉매 매립배관(거실, 침실1)		○	○	○	○	○	○	침실2, 3 미설치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 AA등급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 내 월패드 및 세대 외부에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조명, 주방가스밸브차단, 난방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호별 방문없이 관리소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통합검침시스템으로 원격검침 및 사용량 조회가능						
	무인경비시스템		세대 월패드와 공동현관 로비폰을 통해 방문자 확인 및 개폐, 외부인 사전 통제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입주자 차량은 자동 통과하고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						
	CCTV시스템		승강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 주 · 부출입구						
	일괄소등스위치		스위치 하나로 집안의 조명을 한번에 소등						
	디지털방송 및 위성TV 수신시스템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등 다양한 정보와 방송을 제공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종별 공통)

청약관련 주요 안내 사항

청약 자격

- 2015.5.28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산 · 소득기준 및 공급유형별 자세한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 과거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본인에 맞는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일자에 맞추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인터넷신청 불가)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 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부적격 당첨)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청약신청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15. 6. 3(수) (10:00~17:00)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광주진월 주택홍보관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	15.6.22(월) 14: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광주진월 주택홍보관	'15.6.23(화) ~ 24(수) (10:00~18:00) – 광주진월주택홍보관 ※미제출시 계약 불가	'15.7.15(수) ~ 7.17(금) (10:00~16:00) – 광주진월 주택홍보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15. 6. 3(수) (10:00~17:00)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일반공급	1순위	'15. 6. 4(목) (10:00~17:00)					
	2순위	'15. 6. 5(금) (10:00~17:00)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원 광주선운 택지개발지구내 3BL

□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22세대**

□ **시 행 사 :** (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알려드립니다

- **광주선운 3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 · 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5000514**입니다.(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시 사용)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5.28(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3블록 공식홈페이지(http://광주선운3.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블록 공식홈페이지(**http://광주선운3.kr)는 2015.5.28(목)**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팜플렛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광주선운 3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거주자로 봅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5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임대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1,022세대(특별공급 715세대 포함)

공급대상

주택유형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계)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일반공급	최고층수	최하층배정호수	입주예정시기
10년 공공임대주택	합 계										1,022	102	102	51	205	153	102	307		47	'17.8
	066.9600A	66A	확장	66.96	23.8108	90.7708	2.6405	28.3988	121.8101	41	488	49	49	24	98	73	49	146	25	21	
	066.9400B	66B	확장	66.94	23.8037	90.7437	2.6397	28.3903	121.7737	41	20	1	2	1	4	3	2	7	20	1	
	066.8500C	66C	확장	66.85	23.7717	90.6217	2.6362	28.3521	121.6100	41	100	9	10	5	20	15	10	31	25	4	
	066.9400D	66D	확장	66.94	23.8037	90.7437	2.6397	28.3903	121.7737	41	20	1	2	1	4	3	2	7	20	1	
	074.9800A	74A	확장	74.98	26.6627	101.6427	2.9568	31.8002	136.3997	46	300	35	30	15	60	45	30	85	24	15	
	074.7300B	74B	확장	74.73	26.5738	101.3038	2.9470	31.6942	135.9450	45	94	7	9	5	19	14	9	31	23	5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3	066.9600A	66A	35,000	7,000	28,000	520
	066.9400B	66B	35,000	7,000	28,000	520
	066.8500C	66C	35,000	7,000	28,000	520
	066.9400D	66D	35,000	7,000	28,000	520
	074.9800A	74A	44,000	8,800	35,200	580
	074.7300B	74B	44,000	8,800	35,200	58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3	066.9600A	66A	35,000	175	70,000	345
	066.9400B	66B	35,000	175	70,000	345
	066.8500C	66C	35,000	175	70,000	345
	066.9400D	66D	35,000	175	70,000	345
	074.9800A	74A	44,000	220	88,000	360
	074.7300B	74B	44,000	220	88,000	3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3	066.9600A	66A	145,935	32,148	113,786
	066.9400B	66B	145,900	32,139	113,761
	066.8500C	66C	147,006	32,095	114,910
	066.9400D	66D	147,236	32,139	115,097
	074.9800A	74A	164,468	35,999	128,469
	074.7300B	74B	163,916	35,879	128,037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66㎡,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Ⅱ 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을 말함) 중 1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에 속한 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4">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물</td><td colspan="3">•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table><tr><th colspan="3">구 분</th><th>가액산정 기준</th></tr><tr><td rowspan="3">주거용건물</td><td colspan="2">단독주택</td><td>공시가격</td></tr><tr><td colspan="2">공동주택</td><td>공시가격</td></tr><tr><td colspan="2">오피스텔</td><td>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td></tr><tr><td rowspan="2">비주거용건물</td><td rowspan="2">공장, 상가
(오피스텔)</td><td>건물</td><td>시가표준액</td></tr><tr><td>부속토지</td><td>개별공시지가</td></tr></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3">•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27,940천원
이하</td><td colspan="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td></tr>
</table>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자동차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 취 · 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으로 확인하며,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5년식 자동차를 201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합산 소득이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00%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20%	5,681,524원	6,269,574원	6,672,031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00%)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표4〉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③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④국세청 :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LH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장애인(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광주광역시),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광주광역시),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추천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6.3(수)]에 청약 · 임대상담창구(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번지 광주진월 LH주택홍보관 내)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5.29 ~ 2015.5.2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특별공급은 가구원수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 → 전라남도 거주자) **②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만19세 미만**(1996.5.29~2015.5.28)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9.5.29~2015.5.28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5	①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②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만 40세 이상 : 1975.5.28 이전 출생자 * 만 35세 이상 : 1980.5.28 이전 출생자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금회 모집시 당해시도는 **광주광역시 지역만 해당됨**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4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3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 · 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 → 전라남도 거주자), **②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 → 전라남도 거주자), **②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아래 ‘당첨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 → 전라남도 거주자), **③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II. 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 참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전라남도 거주자) **③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 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며,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III 신청시 확인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 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 · 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⑥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현장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1950.5.28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 · 임대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 · 호수를 지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153)를 방문 또는 유선 ·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국가유공자)	2015. 6. 3(수) (10:00 ~ 17:00)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청약 · 임대상담창구 (광주진월 LH주택홍보관 내)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myhome.lh.or.kr)
일반공급	• 1순위	2015. 6. 4(목) (10:00 ~ 17:00)		
	• 2순위	2015. 6. 5(금) (10:00 ~ 17:00)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본인에 맞는 청약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일자에 맞추어 방문신청해야 함(인터넷신청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 팜플렛,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접수당일(2015.6.3)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 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방문 신청(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 접수시간 내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청약 · 임대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광주선운 3블록 청약 · 임대상담창구**(광주진월 LH주택홍보관 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번지)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임대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청약신청자용)" 을 제출받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신청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장소에 비치
			③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구비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⑥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해당자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신청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장소에 비치
			③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공통	①본인(청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인감증명 방식	②위임장	신청장소에 비치
			③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구비
			④본인(청약자) 인감도장	
		서명확인 방식	②본인(청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본인(청약자)서명사실 확인서	
기타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①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신청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구비
			③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Ⅵ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2015.6.22(월)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2015.6.23(화) ~ 6.24(수) 10:00~17:00	2015.7.15(수) ~ 7.17(금) 10:00~16:00
	제출장소 : 청약 · 임대상담창구(광주진월 LH주택홍보관 內,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번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153)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6.23(화) ~ 6.24(수)]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우리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산 · 소득조회용)” 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가함 (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④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 · 소득 조회용)	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주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⑦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⑧ 재직증명서	본인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서류유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주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⑤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장소 비치)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⑥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⑦ 재직증명서	본인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다자녀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③ 임신증명서류 또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①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19세 이상(1996.5.29 이전 출생자) 자녀 해당)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8)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표6〉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여부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여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모두 해당)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제3자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 방식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서명확인 방식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Ⅶ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광주선운 3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 · 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 · 임대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별(1 · 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⑥항 14의2호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설치시욕조제외),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거실 : 월패드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신 청 시 기 :** 2015.7.15(수)~7.17(금)(최초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지구 및 단지 여건

지구 여건

- 본 지구 주변에 광주송정역, 광산구청, 광주광산경찰서, 광주공항, 어등산관광단지, 보문고등학교 및 호남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는 평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동쪽에는 광주공항, 북쪽에는 어등산 및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운수IC)가 위치해 있음
- 공공임대 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외부여건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 3BL은 '12년.06월 사업준공된 광주선운지구내 북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선운지구내 공공시설물(도로, 녹지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 본 단지 인근에 선운초등학교 및 선운중학교가 위치해 있음
- 단지외 북측에는 완충녹지 및 35m 도시계획도로, 동측에는 완충녹지, 44m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차도, 남측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16m 도시계획도로 및 공동주택, 서측에는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보행자보도 및 공동주택이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외 도로 접근을 위한 보행 출입구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완충녹지 인접경계는 **방음벽**, 연결녹지는 생울타리담장 및 알루미늄주물담장이 설치될 예정(보행자출입구 제외)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경계부에 인근 지형에 따라 다소 단차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며, 단차발생은 조경석 쌓기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부여건

- 공공임대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구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 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 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단지 북측과 동측 경계부에 **방음벽(H=10~11m)**이 설치될 예정이나 단지밖 도로의 차량소음 등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창문이 개폐되지 않음(환기를 위해 일부 창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지구 주변에는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 등(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지구외 주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지구 내 ·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의견 ·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지하저수조,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대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견 ·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중소기업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식재, 시설물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주동통합형임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홍보자료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지구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지하주차장 입 · 출차시 경적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일부 보행통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에 의한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 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 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일부 주동 전면의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지구내 녹지부 등에 이삿짐차량 및 소방 · 구조용차량 접근을 위한 비상통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1,202대(지상주차 : 267대[근린생활시설(상가) 5대 미포함], 지하주차 : 930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동의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의 일부공간이 E/V홀이 인접한 경우 E/V의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 주변에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1층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치 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주변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지하주차장 채광시설(Top Light),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1,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경우 거실 및 발코니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방음벽**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조망 제약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306동 남쪽에 지하주차장에는 지하저수조가 위치하며, 301동과 312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함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 동(301동, 312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302동과 304동 사이 1층에 경로당, 306동 남측 1층에 주민공동시설, 304동, 305동, 306동, 307동 사이 1층에 관리사무소, 305동과 310동 사이 1층에 보육시설, 단지출입구와 302동 사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주민공동시설물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305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됨(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지구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공공임대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66B, 74A, 74B타입은 4층~최상층까지는 대피공간(1~3층은 대피공간 미설치)설치 및 3~10층까지는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66A, 66C, 66D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으며, 유사시 전면 발코니 비상 탈출구(세대간 경량 칸막이)를 이용해야 함
- 거실, 침실1에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거실 : 스탠드형, 침실1 : 벽걸이형)가 설치됨
- 발코니 전면부나 침실, 거실 외부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은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공공임대신청 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트월 부위는 MDF위 실크도배지 이며, 벽걸이 TV설치로 인한 마감재 파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해야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 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고기밀 창호	적 용
고효율기자재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조명기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74)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NH농협은행 (104-86-39742)	(주)한화건설 (104-81-73406)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청약 및 임대 상담

LH주택홍보관

방문문의

▨ 청약 · 임대상담 안내 (광주진월 LH주택홍보관 內)

-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 (062-653-8200, 8199)
- 운영일시 : 2015.5.28(목)~6.3(금), 10:00~17:00
  (청약 조기마감시 변동가능,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주택홍보관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선운 3블록 공식홈페이지

▨ 주 소 : http://**광주선운3.kr** 또는 http://**lhgs3.co.kr**
▨ 운영기간 : 2015.5.28(목) ~ 공급종료 시 까지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청 약 · 임 대 상 담 창 구 : 062)653-8200, 8199

시 행 사 : (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